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2. 1. 6.)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월 6일

고흥군의회의장 송 영 현

규칙 제2022-43호

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관하여 「고흥군 조례·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」 제6조제3항"을 "관하여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"을 "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제3조(공포방법) 군보"를 "군보"로 하며,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「고흥군 조례·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」 제6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이라 한다)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관하여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제3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라 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 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----------.
제3조(공포방법) 제3조(공포방법)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 ①·② (생 략)	제3조(공포방법) ① 군보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흥군 조례·	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흥군 자치법

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」를 준용한다.	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